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한지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603

발의연월일: 2025. 2. 28.

발 의 자: 한지아 · 박성훈 · 고동진

백종헌 · 임이자 · 서지영

정연욱 · 서일준 · 정성국

유용원 · 최보윤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영업자가 시중 유통 물품에 "마약", "대마" 등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이러한 광고를 하더라도 현행 법률에 따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거나 수거・검사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시 또는 광고를하는 영업자에게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마약류, 임시마약류 및 원료물질이 포함될 우려가 있는 식품, 담배 또는화장품 등을 수거하여 검사하고, 그 검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・보완하고자함(안 제3조의2 및 제41조의2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마약류 표시・광고 영업자 등에 대한 권고) 식품의약품안전 처장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 다), 특별시장・광역시장・특별자치시장・도지사・특별자치도지사 (이하 "시・도지사"라 한다)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(자치구의 구 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영업자 등에게 제2조제1호에 따른 마 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아니하 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제4조제4항 전단 중 "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"을 "구청장"으로 한다.

제11조의4제2항제1호 중 "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"를 "시·도지사"로 한다.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1조의2(제품의 수거·검사 등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 품에 마약류, 임시마약류 및 원료물질이 포함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 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- 1. 「식품위생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
- 2. 「담배사업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물품
- 3. 「화장품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물품
-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 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수거·검사와 제2항에 따른 공표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

제64조에 제1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7의2.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수거를 거부 · 방해 또는 기피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현 행	개 정 안 제3조의2(마약류 표시・광고 영업자 등에 대한 권고) 식품의 약품안전처장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, 특별시장・광역시장・특별자치시장・도지사(이하"시・도지사"라 한다)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영업자 등에게 제2조제1호에따른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표현을 사용한 표시 또는 광고
	를 하지 아니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제4조(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	제4조(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
마약류 취급 금지) ① ~ ③	마약류 취급 금지) ① ~ ③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대마를	4
운반・보관 또는 소지하려는	
자는 특별자치시장 · 시장(「제	
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	
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	
에 행정시장을 포함한다. 이하	

같다) • 군수 또는 구청장(자치
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
<u>같다)</u>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이
경우 특별자치시장・시장・군
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 받
은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
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
한다.

⑤ (생략)

- 제11조의4(마약류 통합정보의 제 공 등) ① (생 략)
 -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마약류 통합정보 및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약류통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
 - 1.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
 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
 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
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
 장이 제41조에 따른 마약류
 의 취급 감시 등 안전관리

<u>구청장</u>
·
⑤ (현행과 같음)
제11조의4(마약류 통합정보의 제
공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
1. <u>시·도지사</u>

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- 2. ~ 4. (생 략)
- ③ (생 략)

<신 설>

- _____
- 2. ~ 4. (현행과 같음)
- ③ (현행과 같음)

제41조의2(제품의 수거・검사 등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, 시 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마약류, 임시마약류 및 원료물질이 포함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게 할수 있다.

- 1. 「식품위생법」 제2조제1호 에 따른 식품
- 2. 「담배사업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물품
- 3. 「화장품법」 제2조제1호에따른 화장품 및 이와 유사한형태의 물품
-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, 시· 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를 공표할 수 있다.

제64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저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~ 17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18. ~ 20. (생략)

③ 제1항에 따른 수거・점	검사와
제2항에 따른 공표 등에	대한
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	정한
<u>다.</u>	
제64조(벌칙)	
1. ~ 17. (현행과 같음)	
17의2. 제41조의2제1항에	따른
수거를 거부·방해 또·	는 기
<u> 피한 자</u>	

18. ~ 20. (현행과 같음)